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3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달희 · 안철수 · 김예지
김은혜 · 김기웅 · 서범수
최보윤 · 유용원 · 고동진
강선영 · 서천호 · 김상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검사는 피해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⑧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7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